

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 
2009.03.20 (금) 14:00

충청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산업경제위원회

# 충청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송은섭 의원 외 6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9년 3월 17일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3월 18일

3. 제안 이유

- 도내 토종가축의 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·관리하고 토종가축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토종가축 유전자원의 보존·관리 및 이를 이용한 토종가축의 보급·육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(안 제3조)
- 나.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를 토종가축의 유전자원 보존 및 토종가축 육성을 위한 총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4조)
- 다. 토종가축 사육실태 조사, 유전자원의 수집·보존 등에 관한 계획 수립과 시행 그리고 체계적 개체정보자료 관리 등 총괄기관 장의 책무 규정(안 제5조, 안 제6조, 안 제7조)

라. 토종가축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·조정하기 위한 충청북도토종가축발전협의회 구성 명기(안 제8조)

## 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'은 이번에 처음 제정되는 조례로, 사라져가는 토종가축의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하여 다른 축산물과의 차별화를 통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발전을 꾀하고, 토종가축 육성을 위한 규정을 만든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함.
- 다만, 향후 토종가축 유전자원의 수요와 공급문제, 예산의 소요 규모 등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